

8. 교학협력연구소 운영 규정

개정 2015. 3. 1

제1조(설립목적)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부설 교학협력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교회와 학교의 협력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출판, 학술발표 등을 통해 한국교회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제2조(소재) 연구소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안에 둔다. 단,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위치에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회와 학교의 연계에 관한 전반적 연구
2.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이론의 개발
3.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의 개발, 훈련, 배출
4. 연구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5.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의 개최
6. 본 연구소 연구위원회의 학술 및 실무교환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

제4조(소장)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구분한다.
단,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필요시 위촉한다.
3.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필요시 위촉한다.

②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 방침에 따라 임용한다.

③ 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④ 객원 연구원 및 객원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연구원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연구후원회원은 연구소의 발전과 교육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후원하는 자로,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이다.

제6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을 두고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보직자(처장), 연구소장, 정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담당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 규정의 수개정 심의, 사업 내용에 대한 심의, 예결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

4. 기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의 연구지원금,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현금출납)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교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사업계획)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사업실적)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당해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세칙 등)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따르되,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